

#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8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서북권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

나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
-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2, 지하 1, 2층
- 시설규모 : 4,423.48㎡(주차장 포함)
  - 공연장, 다목적실, 강의실, 커뮤니티실, 연습실 등
- 개관일 : 2020. 11. 4.

다. 위탁기간 : 3년(2023. 1. 1. ~ 2025. 12. 31.)

라. 민간위탁금(안) : 935백만원(2023년 기준)

마. 위탁사무

- 청년 중심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- 일상 속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
- 청년예술가 지원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
-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 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
- 기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홍대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과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,
- 전문공연장 관리·운영 및 홍대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시민·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,
- 문화시설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아. 심의결과 : 적정(20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

- 2023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방지혜 (☎ 2133-2542)

**[지역문화진흥법]**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[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**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

-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**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